

□ 편의제공 대상

- 제2024-2호 아동권리보장원 직원 채용 필기시험전형 또는 면접전형 대상자 중 전형일 기준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,
 - 지체·뇌병변·시각·청각·기타장애 등으로 인하여 채용 시험 응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

□ 편의제공 신청 절차

- ① (편의제공 신청) 시험 시행일 2일 전까지 ①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 신청서 및 ②증빙서류를 이메일로 제출

- 제출방법: 이메일 제출(recruit@ncrc.or.kr)
 - 증빙서류 안내
 - 필수 증빙서류: 장애인증명서
 - 추가 증빙서류: 의사진단서(장애유형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)
 - 의사진단서 발급 관련 안내
 - (발급기관) 「의료법」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
 - * 반드시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(날인)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
 - (진단서 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) 아래 3가지 항목
- ① 장애유형·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* 시각장애의 경우 시력/시야각 명기
 -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
 -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
 - *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
- 기타 유의사항
 -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판단 기준으로 함

- ② (별도 승인)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확인 후 승인 여부 별도 안내

□ 편의제공 신청 시 유의사항

- 하단의 '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'를 참고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,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필요 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

[필기시험] 장애 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

장애유형 및 정도		편의지원 내용	증빙서류
지체 장애인	상지 공통	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 간격 조정) · [논문형 시험] 답안작성용 컴퓨터	-
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·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, 논문형 1.2배) · [선택형 시험] 답안지 대필	-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	-
	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/심하지 않은 장애인	· 휠체어 전용 책상(휠체어 사용자)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 간격 조정)	-
뇌병변 장애인	공통	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휠체어 전용 책상(휠체어 사용자)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 간격 조정) · [논문형 시험] 답안작성용 컴퓨터	-
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·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, 논문형 1.2배) · [선택형 시험] 답안지 대필	-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	의사진단서 (원본 스캔)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	-

장애유형 및 정도		편의지원 내용	증빙서류	
시각장애인	공통	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[논문형 시험] 답안작성용 컴퓨터	-	
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좋은 눈의 시력이 0.04 이하인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7배, 논문형 1.5배) · 음성지원 컴퓨터 · 점자문제지, 점자답안지(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) · 축소문제지(확대독서기 사용자)	의사진단서 (원본 스캔)
		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	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좋은 눈의 시력이 0.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, 논문형 1.2배)	-
		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7배, 논문형 1.5배) · 음성지원 컴퓨터 · 점자문제지, 점자답안지(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) · 축소문제지(확대독서기 사용자)	의사진단서 (원본 스캔)
		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		-
		좋은 눈의 시력이 0.2이하인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, 논문형 1.2배)	-
		나쁜 눈의 시력이 0.02이하이고,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.3이하인 사람		의사진단서 (원본 스캔)
	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	·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	-	
	청각장애인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/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 수화통역사 배치 ·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-
기타	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	·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	검토 후 안내	
	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	· 시험중 화장실 사용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 간격 조정)	의사진단서 (원본 스캔)	

[면접시험] 장애 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

장애유형 및 정도		편의지원 내용	증빙서류	
지체장애인	상지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/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· 전담도우미 지원 ·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· 관련서식 확대 제공	-
	하지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/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· 전담도우미 지원 · 휠체어 전용 책상(휠체어 사용자)	-
뇌병변장애인	공통		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· 전담도우미 지원 ·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· 관련서식 확대 제공	-
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		-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 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	· 면접시간 20분 이내 연장	의사진단서 (원본 스캔)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	·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	-
시각장애인	공통		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· 전담도우미 지원 ·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· 관련서식 확대 제공	-
	· 좋은 눈의 시력이 0.04 이하인 사람 ·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장애인 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	· 음성지원컴퓨터 · 관련서식 점자 지원	의사진단서 (원본 스캔)
	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 응시자		·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	-
청각장애인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/ 심하지 않은 장애인		· 면접시간 20분 이내 연장 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· 의사전달 보조요원(수화통역사 등) · 필담면접, 의사전달용 컴퓨터 · 관련자료 등 서면제공	-
기타	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		·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	-